

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 도입을 내용으로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7426호, 2020. 6. 9. 공포, 2022. 6. 10. 시행)됨에 따라, 자원순환 보증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

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 물티슈의 사용을 억제하려는 것임.

## 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  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환경부령 제 호

##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### 일부개정령안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환경부령 제963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회수하여야”를 “회수해야”로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의2(자원순환보증금액)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용기·1회용 컵(이하 “용기등”이라 한다)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(이하 “자원순환보증금”이라 한다)은 별표 4와 같다.

제12조의3의 제목 “(취급수수료의 지급)”을 “(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지급)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금액(이하 “취급수수료”라 한다)을 말한다.

제1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.

② 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”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금액(이하 “처리지원금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1. 1회용 컵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인건비
2. 임차료 등 1회용 컵의 보관에 드는 비용
3. 1회용 컵의 운반에 드는 차량·유류비
4. 표준용기 외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선별, 관리 및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

③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을 산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.

④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 조사와 법 제1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(이하 “보증금대상사업자”라 한다),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을 각각 산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검토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5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.

제12조의4의 제목 “(빈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의 준수사항)”을 “(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빈용기의”를 “용기등의”로, “빈용기재사용생산자, 도매업자, 소매업자

및 유통지원센터”를 “보증금대상사업자, 도매업자, 소매업자, 1회용 컵수집·운반·재활용업자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”로 한다.

제12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미반환보증금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각각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.

#### 1. 빈용기 미반환보증금

(해당 연도에 출고된 규격별 용기 개수 - 해당 연도에 반환된 규격별 빈용기 개수) × 규격별 자원순환보증금액

#### 2. 1회용 컵 미반환보증금

(해당 연도에 판매된 1회용 컵 개수 - 해당 연도에 반환된 1회용 컵 개수) × 자원순환보증금액

제1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유통지원센터”를 “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”로, “4월 30일”을 “3월 31일”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, “통보하여야”를 “통보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빈용기”를 “용기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빈용기보증금”을 “자원순환보증금”으로, “빈용기가”를 “용기등이”로 한다.

3.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용도에 적합한지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서(사용실적으로 한정한다)

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2호의 | 가. 1회용 컵(종이컵, 합성수 | 사용억제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| 지킵 및 금속박킵 등)<br>나. 1회용 접시(종이접시,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)<br>다. 1회용 용기(종이용기,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)<br>라.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<br>마. 1회용 수저, 포크 및 나이프<br>바. 1회용 비닐식탁보<br>사.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<br><b>아. 1회용 물티슈</b>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.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작·배포 억제 등<br>사용억제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차. 1회용 봉투 및 쇼핑백<br>[「통계법」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이하 “표준산업분류”라 한다)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한다]. 다만,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.<br>1)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<br>2) 다른 제품에 문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 또는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| 무상제공금지. 다만,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한다. |
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 |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|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
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자원순환보증금액(제12조의2 관련)

1. 빈용기의 자원순환보증금액

가. 2016년 12월 31일까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

| 대 상 품 목                     | 규 격                 | 자원순환보증금액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영 제17조제2항<br>각 호에 따른 제<br>품 | 190ml 미만            | 20원/개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90ml 이상 400ml 미만   | 40원/개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0ml 이상 1,000ml 미만 | 50원/개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000ml 이상          | 100원 이상 300원 이하/개 |

나.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

| 대 상 품 목                     | 규 격                 | 자원순환보증금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영 제17조제2항<br>각 호에 따른 제<br>품 | 190ml 미만            | 70원/개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90ml 이상 400ml 미만   | 100원/개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0ml 이상 1,000ml 미만 | 130원/개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000ml 이상          | 350원/개   |

2.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

| 대 상 품 목              | 자원순환보증금액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영 제17조제4<br>항에 따른 제품 | 300원/개   |

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(제12조의4 관련)

1.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빈용기에 관한 준수사항

가. 보증금대상사업자

- 1) 지역별로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빈용기(이하 “빈용기”라 한다)를 회수하기 위한 수집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.
- 2)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제3호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해야 한다.
- 3) 회수된 빈용기를 특별한 이유 없이 파손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.
- 4)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(이하 “표준용기”라 한다)는 이 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하여 사용해야 하며, 표준용기가 아닌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빈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해 세부적인 생산, 회수, 재사용에 관한 계획을 제품 출시 후 3개월 내 수립하여 회수·재사용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- 5) 표준용기 이외의 용기를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이를 돌려줘야 한다.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·반환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- 6) 환경부장관이 4)에 따라 수립한 계획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.
- 7) 소비자의 빈용기 반환 및 자원순환보증금 환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해야 한다.
- 8)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와 소비자로부터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빈용기가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않고,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회수용기 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- 9) 자원순환보증금, 취급수수료 지급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출고, 회수, 파손 및 신병 투입량 등의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.

#### 나.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도매업자

- 1)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공급한 소매점에서 보관 중인 빈용기를 회수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회수해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소매점 등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- 2) 회수된 빈용기에 대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부터 지급받은 자원순환보증금 및 소매업자의 취급수수료는 소매업자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. 이 경우 취급수수료는 해당 소매점 등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- 3) 소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판매된 제품의 빈용기는 도매업자가 직접 회수해야 한다.
- 4) 회수된 빈용기를 제품의 제조·수입 회사별(표준용기인 경우에는 제외한다), 용량별, 회수경로별(도매업자가 직접 회수하는 경우와 도매업자가 소매업자를 거쳐 회수하는 경우를 말한다), 제품별(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별을 말한다) 분류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.
- 5) 회수용기 보급 등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, 소매업자에게 이를 홍보하고 안내해야 한다.
- 6) 자원순환보증금, 취급수수료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판매 및 회수량 등의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.

#### 다.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소매업자

- 1)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.
  - 가)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(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한다). 다만,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.
  - 나) 빈용기가 훼손, 파손 또는 오염되어 다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
- 2) 소비자가 쉽게 빈용기를 반환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반환장소에 대한 안

내판을 설치해야 한다.

- 3)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 및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빈용기 반환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.
- 4) 회수된 빈용기의 훼손을 방지해야 하며, 해당 빈용기를 도매업자 및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반환 시 제조·수입 회사별, 용량별, 제품별로 분류해야 한다. 이 경우 분류방법은 거래하는 도매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- 5)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제품의 가격과 자원순환보증금액을 소비자용 영수증에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.
- 6) 반환되는 빈용기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확인하여 지급해야 한다.
- 7) 자원순환보증금, 취급수수료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판매 및 회수량 등의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.

#### 2.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회용 컵에 관한 준수사항

##### 가. 보증금대상사업자

- 1)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제품의 가격과 자원순환보증금액을 소비자용 영수증에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.
- 2)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, 처리지원금 및 자원순환보증금 표시라벨비를 제3호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해야 한다.
- 3)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1회용 컵(이하 “1회용 컵”이라 한다)을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.
  - 가) 자원순환보증금 표시가 없거나, 바코드 등이 훼손되어 자원순환보증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

- 나) 이미 자원순환보증금을 지급받은 1회용 컵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
- 다) 1회용 컵 본체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표시 라벨 만을 반환하는 경우
- 라) 같은 사람이 1일 30개를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(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한다). 다만, 해당 판매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.
- 마) 내용물이 남아있거나 부속물(뚜껑, 빨대, 홀드 등)을 포함하여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
- 바) 당해 매장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

- 4)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1회용 컵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.
- 5)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1회용 컵은 적절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3호라목에 따라 지정된 수집·운반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.
- 6) 자원순환보증금,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판매 및 반환수량, 스스로 처리한 수량, 수집·운반 등 처리업자에게 인계한 수량 등의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.

#### 나. 반환된 1회용 컵을 회수하는 수집·운반사업자

- 1) 수집·운반사업자는 보증금대상사업자로부터 회수한 1회용 컵을 재질별로 구분하여 제3호라목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해야 하며,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.
- 2) 보증금대상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회수 주기, 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.
- 3) 보증금대상사업자와 상호 협의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1회용 컵의 수거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수거중단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해당 보증금대상사업자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.

#### 다. 1회용 컵을 재활용하는 사업자

- 1) 보증금대상사업자 또는 수집·운반사업자로부터 인계받은 1회용 컵을 표준용기

와 표준용기 이외의 1회용 컵으로 구분하여 재질별로 선별해야 하며, 재활용 방법이 다른 재활용품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.

2) 재활용사업자는 법 제16조제5항 및 이 규칙 제13조2의 방법에 따라 1회용 컵을 재활용[종이컵의 경우 종이팩을 재활용하는 방법 및 기준을 따르고,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컵의 경우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을 재활용하는 방법 및 기준을 따르며, 이 경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컵만으로 재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무색투명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과 함께 재활용할 수 있다]해야 하며, 표준용기 이외의 1회용 컵의 경우에는 해당 재질에 맞는 재활용 방법을 따른다.

3) 선별 또는 재활용하는 사업자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.

### 3.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준수사항

가.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·처리지원금의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전자적 방식의 정보관리 및 자금이체 등이 가능한 지급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해야 한다.

나. 자원순환보증금 반환,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 지급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보증금대상사업자, 도소매업자 및 가맹본부(지역가맹본부를 포함한다)를 대상으로 법 제15조의6제3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.

다. 부당한 방법으로 자원순환보증금,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정산 및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.

라. 1회용 컵이 적절하게 수집·운반되고, 재질별로 고품질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수집·운반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를 지정해야 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8조(플라스틱 제품·재료·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·재활용 방법)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가 폐기물을 회수할 때에는 해당 플라스틱 제품·재료·용기의 판매지역마다 회수체계를 갖추어 회수하거나 회수·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회수하여야 한다.<br>② (생략) | 제8조(플라스틱 제품·재료·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·재활용 방법) ①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회수해야 -----.<br>② (현행과 같음) |
| 제12조의2(비용기보증금액)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의 가격별 비용기보증금액은 별표 4와 같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2조의2(자원순환보증금액)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용기·1회용 컵(이하 “용기등”이라 한다)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(이하 “자원순환보증금”이라 한다)은 별표 4와 같다.  |
| 제12조의3(취급수수료의 지급) ① 법 제15조의2제4항에 전단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”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”이란 법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비용기재사용생산자(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2조의3(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지급) ①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5항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“비용기재사용생산자”라 한다),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(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·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 별로 구분하여 합의로 정한 금액(이하 “취급수수료”라 한다)을 말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비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1항에 따라 취급수수료를 정한 경우 합의가 있는 날부터 2일 이내에 합의된 취급수수료를 유통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.

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금액(이하 “취급수수료”라 한다)을 말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”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금액(이하 “처리지원금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- 1회용 컵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인건비
- 임차료 등 1회용 컵의 보관에 드는 비용
- 1회용 컵의 운반에 드는 차량·유류비
- 표준용기 외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선별, 관리 및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③ <u>비용기재사용생산자,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급수수료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정 신청 사유 및 취급수수료의 산정근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| <p>③ <u>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을 산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.</u>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⑥ <u>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취급수수료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하여 취급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한다.</u>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&lt;삭 제&gt;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④ <u>제3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비용기재사용생산자,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를 합의하여 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</u>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④ <u>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 조사와 법 제15조의2 제3항 전단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(이하 “보증금대상사업자”라 한다),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을 각각 산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</u></p> | <p>제12조의4(<u>비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의 준수사항</u>)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<u>비용기의 원활한 회수·재사용을 위하여 비용기재사용생산자, 도매업자, 소매업자 및 유통지원센터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.</u>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제12조의4(<u>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</u>) -----<br/>----- <u>용기등의</u> -----<br/>----- <u>보증금대상사업자, 도매업자, 소매업자, 1회용 컵 수집·운반·재활용업자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</u>-----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⑤ <u>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비용기재사용생산자,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는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취급수수료를 합의하여 정하여야 한다.</u>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⑤ <u>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검토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5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.</u>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제12조의5(<u>미반환보증금의 산출·사용계획 등</u>) ①<u>법 제15조의3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미반환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용기의 규격별 미반환보증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.</u><br/><u>(해당 연도에 출고된 규격별 용기 개수 - 해당 연도에 반환된 규격별 비용기 개수) × 규격별 비용기보증금액</u></p> | <p>제12조의5(<u>미반환보증금의 산출·사용계획 등</u>) ①<u>법 제15조의3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미반환보증금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각각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.</u><br/>1. <u>비용기 미반환보증금</u><br/><u>(해당 연도에 출고된 규격별 용기 개수 - 해당 연도에 반환된 규격별 비용기 개수) × 규격별 자원순환보증금액</u><br/>2. <u>1회용 컵 미반환보증금</u><br/><u>(해당 연도에 판매된 1회용</u></p> |

